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3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3. 8.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23. 8. 23. 접수 제18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23. 8. 23. 언니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23. 8. 23. 접수 제18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2020. 3. 9. 원고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할부, 일시불 결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2023. 6. 28. 130만 원, 2023. 7. 27. 130만 원의 각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외 할부, 일시불 결제 등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23. 8. 26.부터 합계 3,585,000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외에도 E조합, F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G에 대한 3,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고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유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을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합계 260만 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이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각 현금서비스를 받은 일자에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3. 8. 26.에서야 원고에 대해 최초로 연체를 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서비스 관련 채권을 제외한 할부, 일시불 관련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현금서비스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 일시불 결제 대금 채권들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는 2019. 3.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까지 D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7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의 당시 가액은 60,5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무렵 D의 소극재산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700만 원,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500만 원 외에도 원고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자신은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과 피고의 관계,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미변제 기간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인

별지